

■ 최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동향

- I. 최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관
- II.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기관
- III.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요 동향
- IV. 시사점



이 해 봉
금융감독원 증권검사2국
수석검사역

I. 최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관

영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다수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rporate governance codes), 전문가 보고서, 고위급의 회사법규 검토, 새로운 규정 및 규제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제도개혁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라는 전통에 따라 Cadbury, Greenbury 및 Hampel Committee의 보고서 등 기업지배구조 규범(code)들이 민간의 자율규제 형태로 제시되었고,¹⁾ 최근에는 순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그 개선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당국이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를 중심으로 점차 개입을 늘리면서 직접적으로 모범규준을 통합하고 법제화 등을 통해 공시를 중점으로 하는 집행기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²⁾

본고에서는 영국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동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II.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기관

영국에서 기업지배구조 개혁 프로그램은 통상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DTI는 투자자 등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기본체계(effective framework)를 장려하고 제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³⁾ 이 밖에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추진과 관련된 주요 유관기관은 DTI 산하의 재무보고위원회(FRC: Financial Reporting Council)⁴⁾를 비롯하여,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⁵⁾, 런던증권거래소(LSE: London Stock Exchange) 등이 있다. FRC는 '통합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 이하 'Combined Code'라 약칭)의 제·개정 외에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 등 기업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관련사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FSA의 별도 부서인 상장규제당국(UKLA; UK Listing Authority)은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거하여 유가증권 상장심사권과 함께 상장·공시규정, 유가증권신고서규정 등의 제·개정권을 갖고 LSE와 더불어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다. FSA의 상장규정(Listing Rules)에서는 상장회사들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공시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사업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통해 Combined Code의 적용 및 준수여부를 주주 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comply or explain' principle), 이사들의 보수를 공시하며, 이사들의 보고서에 당해회사의 지속성장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⁶⁾ 이처럼 영국에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종전의 자율규제에서 벗어나 회사법·Combined Code·상장규정·공시규정을 통해서, 그리고 DTI·FSA·FRC·LSE 등 다양한 관련기관의 규제·감독·단속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III.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요 동향

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개정

영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비집행 사외이사 선임 촉구

즉 ProNED운동, 1990년대의 모범규준 준수에 대한 강제성을 늘려온 자율규제 시기, 이후 최근의 정부의 직접개입 등을 거치면서 개정·보완 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에는 많은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를 계기로 경영자의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의 이사회 강화

와 종업원의 경영참가 허용을 요청하는 보고서들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잇달아 발생한 기업부정 사건들을 계기로 영국이사협회(IoD: Institute of Directors)의 <이사 직무지침>(The Guideline of Directors), 비집행 사외이사의 선임 촉구를 위해 설립된 PRONED(Promotion of Non Executive Directors)⁷⁾의 <NED 행동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Non Executive Directors) 발표 등 민간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추가로 있었지만 그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Cadbury-Greenbury-Hampel 3개 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모범규준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준공공기관인 증권거래소의 상장기준을 통해 상장회사들이 모범관행의 준수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점차 강제성이 증가하는 자율규제 형태로 변모하였다. Cadbury Report(1992.12)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⁸⁾, 최소 3명 이상의 비집행이사(NED)의 선임, 각종 위원회의 설치 등 모범관행의 기준을 제시했고, 이들 모범규준들은 상장조건화되어 상장회사들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연차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였다.⁹⁾ Cadbury Committee는 1995년에 상장회사들의 모범규준 준수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이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개별기업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시작으로 평가받았다. 1995년에는 고액의 경영자 보수문제와 관련하여 Greenbury Committee가 설치되어 스톡옵션 등 개별이사의 보수액과 보수 결정방법을 연차보고서에 기재토록 하고, 3~4년 관행의 이사 임기를 원칙 1년으로 하며(계약변경시 예외적으로 2~3년을 인정), 그 준수여부를 보고토록 하는 모범규준을 공표하였고, 상장조건으로 되었다. 1998년에 설치된 Hampel Committee는 Cadbury-Greenbury 보고서의 작동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과 법적책임(liabilities)을 중심으로 ‘Hampel Code’(1998)로 불리는 통합규준을 공표하였으며, 동 규범 역시 상장기준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에는 민간부문에서 모범관행들이 마련되고 상장기준에 반영된 강제성이 가미된 자율규제 환경 하에서 상장회사들이 그 준수 여부를 밝힐 것이 요구되었지만, 대부분은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그 실효성은 별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2003년 7월에는 Hampel Code를 개정하는 새로운 통합모범규준(2003 Combined Code, 이하 ‘Combined Code’로 약칭)¹⁰⁾이 제정되었다. Combined Code는 영국정부가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권고하는 히크 보고서(Higgs Review, 2003.1)·타이슨 보고서(Tyson Report, 2003.6)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DTI 산하의 FRC가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한 것이다. 먼저, NED(사외이사)의 역할과 실효성에 대한 히크 보고서(Review of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Non-Executive Directors)를 간략히 살펴보면, 사외이사 및 이사회의장(Chairman)에 대한 안내지침을 제시하고, Hampel Code의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는 회사를 지휘·통제하면서 회사에 성공을 가져다 줄 책임이 있는 집단이며; 연차보고서에는 이사회 및 주요 위원회의 개최 횟수와 개별 이사의 출석상황이 기재돼야 하며; 이사회구성원 중 ‘의장을 제외한 반수’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하도록 하였다.¹¹⁾

둘째, 사외이사의 역할로 연 1회 집단적 회합 개최; 주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을 경우 주주총회 출석; 경영전략 설정 시 건설적인 관여; 경영진의 업적평가 및 업적보고서 점검; 리스크관리체제 확인; 집행이사의 보수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외이사의 능력으로 성실성과 높은 윤리기준; 건전한 판단; 문제의 제기·조사를 위한 능력과 의지; 인적자원 관리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타이슨 보고서는 이사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이사회를 보완하는 기술·경험 및 균형감각을 갖춘 다양한 인재풀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였다.¹²⁾

Combined Code는 이사회의 구성·보수, 이사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감사(audit) 및 주주들과의 관계 등 좋은 관행의 일반 원칙기준과 특히 상장회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FSA의 상장규정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FSA는 상장기준에서 2003년 11월을 전후하여 Hampel Code와 Combined Code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데,¹³⁾ 영국 내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와 LSE의 Main Market 상장회사들은 연차·결산보고서를 통해 (i) 통합규준의 적용실태를 보고하고, (ii) 통합규준의 준수 확인 또는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장 외국기업들은 자사의 지배구조관행이 통합규준과 어떻게 다른지를 공시해야 한다(‘comply or explain’ 원칙). 한편, DTI는 2004년 12월, 업계·학계 및 헤드헌터들과 심층토론을 거쳐, 기업의 이사회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성과를 개선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범관행과 수단들을 권고하는 ‘Building Better Boards’라는 자료를 발간하기도 하였다.¹⁴⁾

2006년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2006 Combined Code’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FRC가 2005년부터 2003년판의 시행경과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한 것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i) 보수위원회 활동이 제한되던 이사회의장(company Chairman)에 대해, 의장으로 지명됨에 있어서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보수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의장의 보수위원회 의장 겸임제한 권고는 계속 유지), (ii) 이사선임 관련 위임장 양식(proxy appointment forms)에 ‘투표유보’ 옵션(‘vote withheld’ option) (법적으로는 투표가 아니며, 의안 찬반투표 비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을 제공해,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반대투표를 원하지는 않지만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iii) 거수투표(show of hands)가 이루어진 총회에서 행사된 위임장의 명세를 회사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Combined Code의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FRC는 2006년 중에 상장회사(FTSE 100대 기업과 그 외의 상장회사를 구분) 회장들과 연속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Combined Code가 미치고 있는 영향과 여타 기업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논점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으며,¹⁶⁾ FRC는 주요 투자자들과도 유사한 회의를 개최하고 그 논의결과도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나. 회사법제 개편

최근 영국에서의 회사법 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에 전면 개정(Companies Act 1985, 이하 ‘CA 1985’라 약

청)된 이후 1989년과 2004년 두 번 개정되었고, 2006년 11월에는 이 세 회사법 모두를 포괄적으로 개편·대체하는 신회사법이 제정되고 있다.

1989년 11월의 개정회사법(Companies Act 1989, 이하 ‘CA 1989’라 약칭)은 기업의 회계처리 관련법규의 개정, (외부)감사인(auditors)의 자격 및 기업조사관련 자료요구권의 신설 등과 관련된 ‘CA 1985’ 및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었다.¹⁷⁾

한편 DTI는 1998년 3월부터 복잡한 회사법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의 회계감사 관련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자율규제의 전통 등을 감안)하고 회사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는데,¹⁸⁾ 그 결과물은 2004년 10월의 회사법 개정과, 2006년 11월의 회사법제 전반을 개편하는 ‘2006년 회사법’의 제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DTI는 미국 Enron사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의식하여 기업의 재무보고·회계감사와 관련된 감독체계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여,¹⁹⁾ 기업지배구조·외부감사기능·회계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조치와 비입법적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2004년 10월의 개정회사법(Companies(Audit, Investigation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이하 ‘CA 2004’로 약칭)은 회사의 회계처리·보고와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체계의 강화 및 기업조사인의 권한 강화 등 기업의 소위 외부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CA 1989’를 개정하거나 일부조항을 신설하였다.²⁰⁾ 주요 내용은 첫째, 감사인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여, 회계사 단체에 대한 DTI의 허가권을 FRC에 위임하고 회계사 단체들이 준수해야 할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을 FRC가 제정하도록 하였다(§§1 ~ 7; CA 1989 관련규정 개정). 둘째, 기업의 회계 처리·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연간 재무제표 외에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요구권을 FRC에 부여하였고, 분식혐의 관련 세부정보를 국제청이 FRC에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인에 대해 비감사서비스의 제공내용과 관련보수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피감회사의 이사가 감사인에게 감사관련 제반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의무를 부과하였다(§§8 ~ 20; CA 1989/CA 1985의 관련규정 개정). 셋째, 기업조사인(company investigator)²¹⁾의 권한을 강화하여, 기업 현장조사권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기업조사인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정보제공자(감사인 등)를 직업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21 ~ 24; CA 1985의 §447 개정/§§448A 등 신설).

2006년 11월 8일에는 47개 파트, 1300개 조문과 부속표(Schedule 1 ~ 16)로 구성된 ‘200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06 c. 46)이 제정·공표되었다(주요 내용은 별표 참조). 동법은 개혁차원에서 회사법상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단순화하며, 회사의 설립·운전을 보다 쉽게 하고, 주주의 관여와 장기적 투자문화를 강화하며 회사들에게 미래적 관점에서 융통성을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IT기술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²²⁾ 1985년·1989년 및 2004년 회사법 가운데 회사법적 조항들(company-law parts) 즉, 공익회사에 관한 규정·기업조사 및 FRC의 기능과 관련된 규정 등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비회사법적 부분

들을 제외한 규정들은 모두 한군데로 모으는 대체입법이고,²³⁾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 보고·승인, 기업지배구조 규제 등의 기본규정을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조항들은 규정·명령 등 시행에 필요한 2차 위임입법을 남겨두고 있다. 그 가운데 회사정보의 공시, 투명성 의무 지침(Transparency Obligations Directive), 주주 기타 관계자들과의 전자적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e-communications)과 관련된 규정은 우선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2006.12.20 시행명령 발표),²⁴⁾ 공개매수와 관련된 EU 지침(EU Directive on takeover bids) 등 시행명령 초안이 2007년 2월 8일 현재 발표되어 있다.²⁵⁾ 여타 조항들도 시행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2008년 10월까지의 모두 시행될 예정이다.

‘2006년 회사법’ 조항 가운데 특이한 것은 정부당국인 DTI 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회사형태별로 모범정관을 마련·제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²⁶⁾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법령의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에 적극적인 영국 정부당국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으로, DTI는 ‘2006년 회사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2006년 6월에 ‘공개회사 모범정관 초안’(Draft Model Articles of Association for Public Companies)을 발표한 바 있다.²⁷⁾ 회사들이 모범정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회사법규를 안내하면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 공개주식회사와의 차이를 감안하면 공개주식회사의 모범정관이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규정하게 될 것이므로 초안을 공개한 것이다. 실제 발표된 공개주식회사의 모범정관 초안을 보면 98개 조항에 걸쳐 구체적인 정관규정의 예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DTI의 ‘좋은’ 지배구조 촉진기제 확인 용역 실시

2005년 10월, DTI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촉진하는 핵심기제 및 정책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런던 킹스 칼리지 경영학부 연구팀에게 발주하였다. 이는 사회과학 문헌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을 정리하고, ‘좋은’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유도하는 주요 촉진기제들(key ‘drivers’ or mechanisms)을 선별해 내고, 기존의 정책조치(policy initiatives)들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2006년 말에 완결된 동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는 본문만 178쪽에 달하며 DTI는 2007년 초부터 동 기관의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있다.²⁸⁾

최종보고서는 이사회, 주식소유 및 주주행동주의, 정보 및 공시, 감사 및 내부통제, 임원보수, 기업경영권 시장(market for corporate control), 이해관계인 등 7개 부문에 걸쳐 18가지의 ‘좋은’ 기업지배구조 촉진기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이사회회의 독립성, 이사회내의 다양성 및 인적·물적 자원, 이사회과정에의 집중관여도(이사회 부문); 대주주의 존재, 주주행동주의(주식소유 및 주주행동 부문); 공개정보공시의 깊이와 범위, 사적 정보공유의 깊이와 범위(정보 및 공시 부문); 외부감사의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능력, 내부통제시스템의 존재 및 부정행위 신고자의 지원(감사 및 내부

통제 부문); 장기적 성과연동 인센티브, 보수위원회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통제(임원보수 부문); 활발한 기업경영권 시장, M&A 기간중 주주 및 이해관계인을 위한 투명성 및 보호 장치(회사경영권 시장 부문); 기업지배구조에의 이해관계인 관여, 채권자 발언권, 종업원의 재무적 성과에의 참여 및 의사결정시 집단적 발언권(이해관계인 부문) 등이다. 이 최종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 기타 관련 입법조치

영국에서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입법조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8년에 내부고발에 대한 조인과 기업에 대해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익공개법’(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다. 동법은 1993년에 비정부기구(NGO)로 설립된 PCaW(Public Concern at Work)의 지원을 받아 제정된 것인데,²⁹⁾ 제보자에 대한 법적 자문, 기업내부(사외이사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등) 및 FSA 등에 대한 善意的 告發行爲(whistle blowing)에 대한 법적 보호, 동법 위반으로 피해를 당한 제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제도와 하고 있다. 이 밖에 2000년의 개정 연금법(Pension Act)은 연금기금이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기준을 공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연·기금의 투자관행을 개선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IV. 시사점

영국은 국제적으로 발달된 금융부문과 해외투자를 지렛대로 하여 미국과 함께 국제 표준(global standards)을 설정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자율규제의 전통을 살려가되, 최근에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그 검증작업을 병행하는 개혁을 추진하는 등 좀 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법과 기업지배구조를 관장하는 DTI를 중심으로 관련당국과 기관들의 회사법 정비, 효과적인 집행기제의 시행 등 유기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은 우리나라의 정책당국과 유관기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별표>

영국 【2006년 회사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 Schedule 1 (§254,255 관련 해석)

장Part	절Chapter	조문Sections	주요 내용
Part 1		1~6	-회사 유형 등에 관한 일반적 정의 규정
Part 2		7~16	-회사설립 방법, 등기 요건·효과 등 회사 형성 관련규정
Part 3	Ch. 1~4	17~38	-회사 규약(constitution) 개념, 정관 총칙, 회사규약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협약, 규약 기재사항, 사원 통지 등
Part 4		39~52	-회사의 능력 및 관련문제(이사의 권한, 이사·관계인이 포함된 거래의 규약상 제한, 사업영위 형식 등)
Part 5	Ch. 1~6	53~85	-회사의 명칭 일반요건(금지명칭, 민감한 명칭·표현 제한 등) -회사 유형·법적형태의 표시(유한회사(public/private limited companies)의 표시요건, 부적절한 표시의 사용제한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정보에 대한 통상산업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의 권한 등
Part 6		86~88	-회사의 등기 소재지 규정
Part 7		89~111	-회사의 지위변경 유형별 재등기 요건(폐쇄/공개→공개/폐쇄, 폐쇄·유한→무한, 무한·폐쇄→유한, 공개→폐쇄·무한 회사)
Part 8	Ch. 1~4	112~144	-회사의 사원(members) 개념, 자회사의 지주회사 사원 금지 등
Part 9		145~153	-사원의 권리행사(정보접근권의 대상·성질, 타인을 위해 보유하는 자의 권리행사 등)
Part 10			-회사의 이사에 관한 규정
	Ch. 1~2	154~181	-이사의 임명·등기·해임, 일반적 의무의 유형·성질 및 위반시 민사책임 등
	Ch. 3	182~187	-기존 거래 또는 약정상 이해관계의 서면통지 등 공표의무

	Ch. 4	188~226	-사원의 승인을 요하는 이사와의 거래 유형(역무계약, ‘상당한’ 자산의 거래, 금전대여 등 거래, 퇴직시 급여) 및 보충규정
	Ch. 5	227~230	-이사의 역무계약 및 사원의 계약서 검사·열람권
	Ch. 6	231	-이사들만의 거래시 요건
	Ch. 7	232~239	-이사들의 법적책임, 법적책임으로부터 보호규정, 법적책임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추인 등
	Ch. 8	240~246	-이사의 주소 등의 공시로부터 보호
	Ch. 9	247~259	-사업 중단·양도시 종업원 보호 규정, 이사회이사록, ‘사실상 이사’(shadow director) 등의 의미, 이사 및 회사의 관계인 개념 등
Part 11	Ch. 1~2	260~269	-사원의 파생소송 등(derivative claims and proceedings)
Part 12		270~280	-회사기록관(company secretaries) (적용면제 대상 폐쇄회사의 범위, 공개회사의 기록관 유지·선임명령·자격요건 등)
Part 13			-회사의 의결 및 회의 관련 규정
	Ch. 1~3	281~335	-결의 요건, 투표규칙, 사원의 의견서 회람 요청권·회사의 회람의무·비용 등, 대리인임명 등 위임장 규정, 전자적 문서송달 등
	Ch. 4	336~340	-공개회사의 정기총회(AGM)에 관한 적용 규정
	Ch. 5	341~354	-상장회사(quoted companies) 적용 규정(투표결과와 웹사이트 공표, 독립적인 투표결과 보고요구권, 투표평가인 지명 등)
	Ch. 6~7	355~361	-의결·회의 기록 등; 상장회사의 의미 ³⁰⁾ 등 보충규정
Part 14		362~379	-정치적 기부·지출의 제한 및 적용면제 대상
Part 15			-회사의 회계 및 보고
	Ch. 1~4	380~414	-총칙규정(소규모회사, 상장·비상장회사), 회계기록, 회계연도, 연간 회계 및 개별·집단 회계 등 회계원칙
	Ch. 5	415~419	-이사의 보고 의무·유형·내용 등
	Ch. 6	420~422	-상장회사 이사의 보수 보고서 작성의무
	Ch. 7	423~436	-회계·보고서의 회람의무 및 상장회사의 웹사이트 공표 등
	Ch. 8	437~438	-공개회사의 주주총회 전 회계 및 보고서 제출
	Ch. 9	439~440	-상장회사 사원의 이사보수 보고에 대한 승인
	Ch. 10	441~453	-회사 규모·유형별 회계·보고 제출 의무, 위반시 조치 규정
	Ch. 11	454~462	-자발적 회계 수정, 통상산업부장관의 통지, 법원 고지, 조세 당국의 정보공개, 회사조사권
	Ch. 12	463~474	-보충규정(허위·오해유발 책임, 회계기준, 중기업 요건, 회계·보고기준 제정권, 회계주석 등 보충적 정의규정)
Part 16			-회계감사(audit)
	Ch. 1	475~484	-회계감사 요건(사원의 감사요구권), 감사면제(소기업, 휴면기업), 공공부문 감사 대상회사, 규정개정권
	Ch. 2	485~494	-감사인(auditors) 임명(폐쇄회사, 통상산업부장관의 공개회사 외부감사인 임명권, 감사인 보수·선임조건 공시·감사서비스 내용 공시 등)
	Ch. 3	495~509	-외부감사인의 기능(감사보고서, 의무·권한, 서명, 위반조치 등)
	Ch. 4	510~526	외부감사인 해임 사임 사임 감사인의 진술권 등

			-
	Ch. 5	527~531	-상장회사 사원의 감사문제 제기권(문제의 웹사이트 공표요구 등)
	Ch. 6~7	532~539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책임면제규정의 무효, 책임제한약정 등) 등
Part 17			-회사의 주식자본(share capital)
	Ch. 1~3	540~577	-주식 일반규정, 배정 일반규정, 주주의 우선인수권 및 예외 등
	Ch. 4	578~579	-공개회사: 청약미달시 배정
	Ch. 5	580~592	-주금 납입(일반규정, 공개회사에 대한 적용규정, 법원 권한 등)
	Ch. 6	593~609	-공개회사: 현물출자 공정가치 규정
	Ch. 7~11	610~657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자본의 변경(분할·병합 등), 종류주식 및 종류주주권한, 자본 감소(폐쇄회사, 법원명령, 공개회사, 효과 등), -보충규정(공개회사 이사들의 심각한 자본손실시 회의소집의무 등)
Part 18	Ch. 1~7	658~737	-유한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일반규정, 취득시 재정적 지원의 정의·해당상황·금지예외, 상환주식(redeemable shares), -자기주식 매입(일반규정, 매입권한, 장외·장내 매입권한 등) -폐쇄회사의 자본에 의한 상환·매입 요건 등 -금고주(treasury shares) 한도, 권한행사, 처분 등
Part 19		738~754	-채무증권(debentures)
Part 20			-폐쇄회사 및 공개회사
	Ch. 1	755~760	-폐쇄회사의 주식공모(public offers) 금지 및 중지명령권 등
	Ch. 2	761~767	-공개회사의 최소자본금 요건
Part 21			-증권의 교부(certification) 및 양도
	Ch. 1~2	768~790	-일반규정, 증서없이 증권에 대한 권원 증명·양도 요건
Part 22		791~828	-회사 주식에 대한 권리(interest) 정보(통지요건, 제한부과 명령, 주주의 요구권, 권리등기부의 공시, 권리 개념 등)
Part 23			-배당(distributions)
	Ch. 1~3	829~853	-배당제한(배당 개념, 투자회사의 배당 등), 회계기준에 적합한 적정배당, 보충규정(회계문제, 배당종류, 불법배당책임 등)
Part 24		854~859	-회사의 연간 이익(분배의무, 연간이익의 내용 등)
Part 25			-회사의 채무(charges)
	Ch. 1~3	860~894	-등기 대상, 채무증서 특칙, 특정등기사항 효력규정 제정권 등
Part 26		895~901	-조정 및 구조조정(채권자·주주집회, 법원의 권한 등)
Part 27			-공개회사의 합병 및 분할
	Ch. 1~4	902~941	-적용범위, 합병·분할 요건(합병계획, 조건공표, 사원 승인, 이사 설명보고, 전문가 보고, 서류검사 등), 독립성 등 전문가 보고 요건 등
Part 28			-공개매수(takeover) 등
	Ch. 1	942~965	-공개매수합병 패넌(Panel on Takeover and Mergers) 관련규정
	Ch. 2~3	966~991	-공개매수의 제한, 분사(squeeze-out) 및 매각(sell-out) 관련규정

	Ch. 4	992	-이사의 보고서 관련조항(CA 1985 Part 7) 개정
Part 29		993	-사기적 거래의 금지
Part 30		994~999	-불공정한 침해(unfair prejudice)로부터 사원 보호 규정 (사원의 청원, 통상산업부 장관의 청원, 법원의 권한 등)
Part 31			-해산(dissolution) 및 등기부 회복
	Ch. 1~3	1000~1034	-말소(휴면회사, 신청), 해산회사 재산의 무주재산 처리(bona vacantia 처리(왕실귀속 등), 등기부 회복 규정
Part 32		1035~1039	-회사조사 관련규정(기업조사관 임명, 사임·해임·교체 등)
Part 33	Ch. 1~2	1040~1043	-회사법규에 의하지 않고 설립된 영국회사(등기허용, 미등기)
Part 34		1044~1059	-외국회사(개념, 특정사항 등기의무, 기타 요건, 보충규정)
Part 35		1060~1120	회사의 등기부
Part 36		1121~1133	-회사법 위반 조치 관련규정
Part 37		1134~1157	-회사: 보충규정(회사기록, 문서송달, 공정가치계산 등)
Part 38		1158~1174	-회사: 해석규정(관련 정의규정 등)
Part 39		1175~1181	-회사: 관련규정 개정(폐지규정 등)
Part 40		1182~1191	-회사 이사: 외국 부적격기준, 부적격 결정권 등
Part 41			-사업명칭(상호)
	Ch. 1~3	1192~1208	-제한·금지 명칭, 개인·파트너쉽의 공시 요건, 보충규정
Part 42			-법정 외부감사인(statutory auditors)
	Ch. 1~5	1209~1247	-감사인 선임의 적격성; 독립성·전문성 요건, 단속; 감사실시, 독립적 감독, 보고요건; 감사인 등의 등록 등
	Ch. 6	1248~1264	-보충 일반규정(통상산업부 장관의 2차 감사요구권 등)
Part 43		1265~1273	-투명성 의무 및 관련문제(투명성 지침, 당국의 정보요구권, 기업지배구조 규칙(corporate governance rules), 허위·오해유발 표시에 대한 법적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범위 및 규정 등)
Part 44		1274~1283	-보칙규정(보험계리기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정보제공 및 적용대상, 「Enterprise Act 2002」 하의 정보공시 등)
Part 45		1284~1287	-북아일랜드 적용 지 확대
Part 46		1288~1297	-일반 보칙규정(규정 및 명령, 입법의 개념 등)
Part 47		1298~1300	-final provisions(법령 약칭, 적용범위, 시행일)
Schedules (부속표)			-관련자: 주식·채무증서 권리 관련
Schedule 2 (§948, 457 관련)			-특정인(개인정보 공시제한 적용예외 대상), 공시 기재사항 등
Schedule 3 (§1124 관련)			-주식 권리정보 미제공 등 처벌(「CA 1985」 존치규정 개정)
Schedule 4 (§1144(1) 관련)			-회사에 송달·제공된 문서·정보 소통형식 등
Schedule 5 (§1144(2) 관련)			-회사에 의한 소통형식(hard copy/electronic/website 등)
Schedule 6 (§1159 관련)			-자회사(subsidiary) 등의 개념
Schedule 7 (§1162 관련)			-모기업, 자회사 보충규정
Schedule 8 (§1174 관련)			-정의규정 일람표
Schedule 9 (§1175 관련)			-비영리회사의 회계·감사 관련규정 삭제(CA 1985 등 규정)
Schedule 10 (§1217 관련)			-공인 감독기구 지정, 요건 등

Schedule 11 (§1220 관련)		-전문성 자격 인정, 허가 등
Schedule 12 (§1242 관련)		-등록된 제3국 감사인 참여시 약정 등
Schedule 13 (§1252 관련)		-위임명령 관련 보직규정
Schedule 14 (§1264 관련)		-법정 외부감사인 관련규정(CA 2004 규정) 개정
Schedule 15 (§1272 관련)		-투명성의무 관련문제: 관련규정(FSMA 2004) 개정
Schedule 16 (§1295 관련)		-회사법규 폐지범위 (CA 1985, Insolvency Act 1985, CA 1989, CA 2004 등 관련법규의 해당조문 등 폐지범위)

1) 영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기본골격은 Cadbury위원회를 이끈 Cadbury경에 의해 마련되었고(1992, Cadbury Report), 이것이 Greenbury Report(1995)에서 보완되고 Hampel Code(1998.1)로 통합된 바 있다. 현재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은 통상 산업부(DTI) 산하의 FRC가 그 제정·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Combined Code로 일원화되어 있다.

2) Howard Davies(前 FSA 위원장)는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추진이 자율규제에서 공시중심의 규제로 변화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2002. 4. 20, 중국 증권규제위원회 연설,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Development of Global Capital Markets”<<http://www.fsa.gov.uk/Pages/Library/Communication/Speeches/2002/sp96.shtml> (2007.2.10 최종 방문)>참조).

3) 영국 통상산업부의 웹사이트 ‘Better Business Framework’에서는 회사법(Company Act), 기업지배구조 및 그 연구(Corporate Governance and Research), DTI의 기업지배구조 정책(Corporate Governance Initiative) 등을 게시하고 있다[<http://www.dti.gov.uk/bbf/> (2007.2.10 최종방문) 참조].

4) FRC[<http://www.frc.org.uk/>]는 1985년 회사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의 제·개정, 기준 준수여부 감사·제재,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준의 제·개정 및 적용 촉진 등을 위해 1990년에 설립된 민간 회계감독기구이다. FRC 이사는 DTI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이 임명하며 FRC 예산의 일부(1/3)는 정부가 출연하고 있다. 2004년 4월에는 종전에 Accountancy Foundation이 관장하던 회계업계 감독기능을 흡수하여 통합된 독립적 회계감독기구로 변모하였고, 2004년 개정회사법에 의거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5) FSA는 「1986년 금융서비스법」과 「1987년 은행법」 및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00)에 의거,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유지 등을 설립목표로 하여 부여된 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비정부기관이다. 1997년 5월 영국 재무성(TM Treasury)의 새로운 금융규제기구 설립계획에 따라 그해 10월 은행 감독 및 투자사업 규제 업무를 종전의 증권투자위원회(SIC)에 흡수시켜 그 명칭을 FSA로 바꾸었다[<http://www.fsa.gov.uk>]. FSA의 설립근거법인 ‘FSMA 2000 (c. 8)’은 다음 웹사이트(2007.2.10 최종방문)를 참조.

6) FSA Listing Rules, LR 9.8.6 및 LR 9.8.7. FSA, “LISTING RULES INSTRUMENT 2005”(FSA 2005/35), 16 June, 2005. 참조 [<http://www.fsa.gov.uk/Pages/Doing/UKLA/index.shtml>]

7) 비집행이사(사외이사)의 선임을 촉구하는 ProNED 운동은 1981년 영란은행의 주도로 시작되었고, 1982년에 영란은행·영국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ies; CBI)·City 관계기관의 지원으로 PRONED가 설립되었다. 1987년에는 「NED 행동규범」을 발표하여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3명이상의 NED 선임, 이사회구성원의 3분의 1을 NED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中村瑞穂編著, 「企業倫理と企業統治—國際比較—」(東京: 文眞堂, 2004), 87 ~ 97면 참조].

8) Cadbury Report 이후 영국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는 대원칙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위의 Howard Davies(前 FSA 위원장)의 연설(주 2) 참조.

9) Cadbury Committee, Cadbury Report(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Financial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London: Gee, 1992), pp.61 ~ 62. Cadbury위원회는 증권거래소·회계사협회 등의 주도로 설치되었는데, 위원장인 Cadbury(2004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작업에도 참여)도 실은 Cadbury Chocolate plc의 경영자였고, Greenbury 위원회의 Greenbury도 Marx & Spencer 백화점의 최고경영자겸 이사회 의장으로서 참여하고 있듯이 규제대상(고위경영자들)이 자기를 규제할 규정을 정한다고 하는 자율규제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하태수, “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정부개입,”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서울행정학회), 제12권 제4호(2001), 47 ~ 48면 참조].

10) Combined Code 원문은 FRC 웹사이트[<http://www.frc.org.uk/corporate/combinedcode.cfm>(2007.2.10 최종방문)] 참조. 그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NED)와 관련된 Higgs보고서, 감사위원회에 관한 Smith보고서 등 안내지침(guidance)이 있다. 이들 지침은 모범기준에 대한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식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이 밖에 내부통제제도(Combined Code §C.2)의 적용을 안내하는 턴불지침(Turnbull guidance)이 있다[www.frc.org.uk/corporate/internalcontrol.cfm](2007.2.10 최종 방문) 참조].

11)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을 제외한 인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은 가부동수일 때 이사회 의장(회장)의 표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증권거래법에서 자산총액 2조원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종전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한바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 제1항 단서).

12) 2002년 4월 통상산업부(DTI) 장관과 재무부장관이 UBS위버그의 Senior Advisor였던 Derek Higgs에게 사외이사(NED)의 역할과 실효성 여부를 독립적으로 점검하여 보고하여 주도록 의뢰하여 나온 검토결과이다. 이 밖에 감사위원회에 관한 스미스보고서(Smith Guidance)의 권고사항도 2003년판 Combined Code에 반영되었다. Higgs Review-Smith Guidance-Tyson Report 등은 DTI의 웹사이트 Better Business Framework 부분에 게시된 자료[<http://www.dti.gov.uk/bbf/corp-governance/higgs-tyson/page23342.html>(2007.2.10 최종 방문)]를 참조.

13) LES (COMBINED CODE) (AMENDMENT) INSTRUMENT 2004(FSA 2004/16)", 15 Jan. 2004. 참조.

14) DTI, Building Better Boards(Dec. 2004). 이와 관련된 자료들은 DTI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http://www.dti.gov.uk/bbf/corp-governance/better-boards/page17362.html>(2007.2.10 최종 방문)].

15) '2006 Combined Code'는 FRC 웹사이트[<http://www.frc.org.uk/corporate/combinedcode.cfm>(2007.2.10 최종방문)]를 참조.

16) FTSE 100대 기업 회장(Chairs) 및 그 외 기업 회장들과의 주요 토론결과는 다음 자료를 참조(2007.2.10 방문).

1. <http://www.frc.org.uk/documents/paganager/frc/Summary..FRC..discussions..with..FTSE100..Chairs..June..2006.pdf>
2. <http://www.frc.org.uk/documents/paganager/frc/Summary..FRC..discussions..with..FTSE250..and..Small..Cap..Chairs..October..2006.pdf>

17) 'Companies Act 1989'(동법 §216에서 약칭을 규정)는 'CA 1985' 뿐만 아니라 Fair Trading Act 1973; Financial Services Act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Company Securities (Insider Dealing) Act 1985; Policyholders Protection Act 1975 등도 개정하고 있으며, 24개의 별표규정(Schedule)들을 포함하고 있다. 동법 원문은 영국정부의 정보공개청구인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의 웹사이트에 게시된 htm 파일로 공개된 자료(작성일 2000.9.20)[http://www.opsi.gov.uk/acts/acts1989/Ukpga_19890040_en_1.htm (~ 34.htm) (2007.2.10 최종 방문)]를 참조.

18) DTI는 지명도 높은 회사법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회사법개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변호사, 금융분석가, 회계사 등)로 13개의 실무반을 구성하였으며, 고른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관련된 이해세력들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하였다[하태수, 전계논문(위의 주 9), 49 ~ 50면 참조].

19) 감사 및 회계처리 관련 개혁의 추진을 위해 2002년 2월 재무부와 통상산업부(DTI)가 공동 주관하고 FSA·FRC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CGAA; Co-ordinating Group on Audit and Accounting Issues)이 결성되었고, DTI도 자체적으로 FRC의 역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별도 검토를 진행하였다. 2003년 1월 CGAA와 DTI는 각각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 '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c.27' 원문(PDF 파일)은 영국 OPSI의 웹사이트 자료[http://www.opsi.gov.uk/acts/acts2004/ukpga_20040027_en.pdf(2007.2.10 최종 방문)]를 참조.

20) 'Companies(Audit, Investigations and Community Enterprise) Act 2004 c.27' 원문(PDF 파일)은 영국 OPSI의 웹사이트 자료[http://www.opsi.gov.uk/acts/acts2004/ukpga_20040027_en.pdf(2007.2.10 최종 방문)]를 참조.

21) DTI의 기업조사국은 회사의 부당행위(misconduct)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업조사인(company investigator)을 임명하여 회사를 조사할 수 있다(CA 1989 및 CA 2004 §21에 의해 개정된 CA 1985 §447).

22) 2005년 3월 발표된 DTI의 「회사법개혁법안 백서」(Company Law Reform Bill - White Paper March 2005), 2005년 11월 상원에 제출된 「회사법개정법안」(Company Law Reform Bill), 2006년 5월 하원에 제출된 법안('Companies Bill'로 명칭 변경) 등 개정방향과 주요 논점에 대하여는 윤영신, "영국의 회사법 개정방향과 시사점," 上場協研究(한국 상장회사협의회) 제54호 2006/10, 74 ~ 98면 참조.

23) 2006년 11월 8일 통과된 'Companies Act 2006'과 주석설명 자료는 영국 OPS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아래 1, 2). 동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DTI의 회사법개혁법안 백서(Company Law Reform Bill - White Paper March 2005), 회사법 검토보고서(Related Documents: Company Law Review), 'CA 1985/1989/2004'에 잔류하게 될 규정들의 내용 등은 DTI 홈페이지 게시자료(아래 3)를 참조.

1. http://www.opsi.gov.uk/acts/acts2006/ukpga_20060046_en.pdf
2. http://www.opsi.gov.uk/acts/en2006/ukpgaen_20060046_en.pdf
3. <http://www.dti.gov.uk/bbf/co-act-2006/index.html> (이상 2007.2.10 최종방문).

24) First Commencement Order Made: 20 December 2006. Main provisions brought into force: Provisions relating to First Company Law Amendment Directive (disclosure of company information); Transparency Obligations Directive; e-communications provisions. Related documents/links: SI 20063428:The Co Act 2006 Commencement No1 transitional provisions & saving order 2006(아래 1); SI 20063429:The Co Act 2006 Registrar, Languages & Trading disclosures, Regulations 2006(아래 2).

1. http://www.opsi.gov.uk/si/si2006/uksi_20063428_en.pdf
2. http://www.opsi.gov.uk/si/si2006/uksi_20063429_en.pdf (이상 2007.2.10 최종방문).

25) Second Commencement Order Draft laid: 8 February 2007. Main provisions brought into force: Takeovers. Related documents/links: Implementation if the EU directive on takeover bids: guidance on changes to the rules on company takeovers(아래 1); Briefing on second commencement order and regulations applying provisions of the Companies Act 2006 concerning takeovers to unregistered companies(아래 2).

1. <http://www.dti.gov.uk/files/file37429.pdf>

2. <http://www.dti.gov.uk/files/file37430.pdf> (이상 2007.2.10 최종방문)

26) Companies Act 2006, Section 19. 동 조항은 DTI 장관(Secretary of State)이 각기 다른 회사형태별로 모델정관을 처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7) DTI가 PDF 파일로 공개한 ‘공개회사 모델정관 초안’[<http://www.dti.gov.uk/files/file29935.pdf>] 및 Q&A 자료[<http://www.dti.gov.uk/files/file29936.pdf>]를 참조(2007.2.10 최종방문). DTI는 Q&A에서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shares(미공개유한책임주식회사)’, ‘private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미공개보증책임회사)’, ‘public companies(공개회사)’ 등 세 가지 형태의 모델정관이 제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8)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and King's College London, Identifying the Key Drivers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ppropriateness of Policy Responses(Final Report, 2007).

<<http://www.dti.gov.uk/files/file36671.pdf>(2007.2.10 최종방문)>

29) PCaW(Public Concern at Work)[<http://www.pcaw.co.uk>]는 1999년 7월부터 공익공개법(PIDA)이 시행되면서 영국 Bar Council에 의해 고발행위에 대한 법률자문센터(legal advice centre)로 지정되었다. 동법 관련자료는 PCaW 웹사이트[<http://www.pcaw.co.uk/legislation/legislation.html>] 자료를 참조(2007.2.10 최종방문).

30) CA 2006, Section 361 및 385(2)(a) ~ (c). 상장회사(quoted company)란 그 자본지분주식(equity share capital)이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c. 8)) 제6장(Part 6)의 규정에 의한 공식상장부(official list)에 포함된 회사, EEA 국가에 공식 상장된 회사, NYSE 또는 Nasdaq에서 거래가 승인된 회사를 말함.